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자료

용연실버빌

노인인권이란?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권리는?

-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5)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8)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노인학대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노인학대의 종류

- 1) 신체적 학대
- 3) 성적학대
- 5) 방임

- 2) 정서적 학대
- 4) 경제적 학대
- 6) 유기



신체적 학대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예) 설명할 수 없거나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예) 소외시키거나 말·행동을 통해 무시하고 욕을 한다.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예) 성적 수치심을 주는 농담을 하거나 몸을 만진다.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예) 허락 없이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가로채거나 사용한다.

방임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예) 조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적 처치 등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예)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 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학대 신고방법

노인학대 신고접수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국번없이)

경찰서

112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
으로 방문하여 신고

노인학대 신고앱



앱스토어에서
나비새김(노인지킴이)를
다운받아 신고해 주세요!



Download on the
Google Play

다운로드
바로가기



Download on the
App Store

다운로드
바로가기

?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보장되나요?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2)